

(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-참조5)

2020. 4. 27.(월) 10:00

본 회 의 장

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



성 남 시 의 회

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

○ 존경하는 의장님!

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

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!

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마선식입니다.

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

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

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○ 지난 4월 23일

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

“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” 등 총 3건에 대하여

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

관계 법령 및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

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

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.

○ 첫번째, 성남시장이 제출한

“성남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.

본 조례안은 시설 부설주차장 등을 무료개방하여 주차 공간 부족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나눔경제를 실현하는 교회, 학교, 기업체 등의 주차장 관련 시설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“원안가결” 하였습니다.

○ 두번째, 성남시장이 제출한

“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.

본 조례안은 「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」 중 감사원 [조달분야 불공정행위 및 규제점검] 감사 실시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개정하고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시 법률상 근거 없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역주민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는

「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」
제10조 제2항 일부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
“원안가결” 하였습니다.

- 세번째, 윤창근 의원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한
“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.

본 조례안은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
례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고 가로주택
정비사업 기준면적 완화 및 예산 보조 항목 신설을
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 하고자

조례 개정안 제3조제2항제1호 중
“18호”를 “18호 미만일 것”으로,

같은 항 제2호 중

“36세대”를 “36세대 미만일 것”으로,

같은 항 제3호 중

“기존 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”을

“기존 주택의 구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 으로,
“단독주택의 호수와” 를 “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 .”
으로 한다

제34조제7호 중

“빈집실태조사, 빈집정비계획” 을 “그 밖에” 로
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
“수정가결” 하였습니다.

-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
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
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
“안”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
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
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
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마 선 식